##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덕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686

발의연월일: 2025. 4. 9.

발 의 자: 박덕흠 · 서천호 · 강승규

구자근 • 이종배 • 고동진

김선교 • 조지연 • 김예지

엄태영 의원(10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산불을 진화하던 산림항공기가 추락하면서 조종사가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 항공기는 44년된 노후 기종으로 확인됐고, 앞서 2022년 강원도 양양 산불 당시 추락한 산림항공기는 1 975년 제작돼 생산한 지 47년 된 노후 기종으로 파악됐음.

현재 산림청이 보유 중인 산림항공기는 모두 50대로, 기령이 20년을 초과한 항공기는 약 65%(33대)에 이르고, 이 가운데 기령이 30년 이 상 된 항공기는 12대 정도 된 것으로 확인돼 노후화 비중이 높음.

특히 산림항공기는 산불 진화 시 발생하는 연무, 담수를 위한 수상 비행 등 부식 환경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지만 산림항공기 특성에 맞는 운영연한 및 부품 내구연한에 대한 규정이 없는 상황임.

이에 산림항공기와 부품에 대한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, 이를 초과한 산림항공기 또는 부품은 운

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도록 하며,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고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한정적인경우에만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(안 제55조).

법률 제 호

###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와 산림항공기의 부품에 대하여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.
- 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초과한 산림 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 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. 다 만, 산림항공기의 운영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 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운영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.
- ④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 도입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산림항공기의 수급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6개월 의 범위에서 제3항에 따른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 다.
- ⑤ 그 밖에 산림항공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령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	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
제55조(산림항공기 운용) ① (생	제55조(산림항공기 운용) ① (현
략)	행과 같음)
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의	② 제1항에 따른 산림항공기와
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	산림항공기의 부품에 대하여 운
식품부렁으로 정한다.	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농림축산
	식품부렁으로 정한다.
<u>&lt;신 설&gt;</u>	③ 산림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운
	영연한 및 내구연한을 초과한
	산림항공기 또는 산림항공기의
	부품을 운영하거나 사용할 수
	없다. 다만, 산림항공기의 운영
	여건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
	품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성 요건
	이 충족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
	위에서 운영연한을 연장할 수
	있다.
<신 설>	④ 산림청장은 산림항공기 도입
<u> </u>	이 지연 및 중단되는 등 부득이
	한 사유로 산림항공기의 수급이
	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
	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
	하는 안전성 요건이 충족되는
	경우 6개월의 범위에서 제3항에

	따른 운영연한을 초과하여 운영
	<u>하게 할 수 있다.</u>
<u>&lt;신 설&gt;</u>	⑤ 그 밖에 산림항공기의 운영
	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
	품부령으로 정한다.